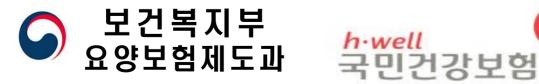
코로나19 관련,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3차)

2020. 3. 6.





I 목적 및 기본방향

_ 목적

○ 코로나-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,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(1차, 2차)」에 이어 3차 지침을 추가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2020년 <u>3월(급여제공월 기준)에</u> 한하여 한시적 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.
 - ◆ 기존 한시적 지침(1차, 2차)은 2월에 한하여 적용·종료되며,2020.3.1~ 31.(급여제공일)기간은 동 지침(3차)을 적용함.
 - ※ 다만, 2월 소급 또는 3월 연장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기준별 적용 월을 별도 명시함.
- 종사자의 업무배제는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<u>4개국 국가</u> (중국, 싱가포르, 태국, 일본)에 한하여 인정하고, 2020.2.18.이후 부터 2개국(홍콩, 마카오)을 추가하여 인정함.
-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는 <u>객관적인</u>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관계 기록 등이 수반되어야 함.
 - 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, 주민등록등본, 종사자 직무배제사유기록 등
-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 시에도 **수급자의 돌봄**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.

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'윌 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

-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,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'유급병가'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
 - O (확진자 발생 시)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
 - O (의심되어 격리 시)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
 - 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<u>'병가일수' 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</u>
 - 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항공권 등 치료·격리 대상 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
 -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경우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'유급병가'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
 - 1일 8시간,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 - 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**'병가일수' 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**
 - 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 - □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
 * 또는 시설장의 판단(주야간보호 긴급돌봄 등)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,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일부 인정
 - 1일 8시간,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 - 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<u>'병가일수' 와 별도산정 가능('예방적</u> <u>격리' 코드)</u>

- *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, 이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예방적 격리 코호트 신청서 또는 시설장 판단하에 해당 종사자의 업무배제를 한 상황과 사유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.
- 2차 지침에 의해 2020년 2월에 적용한 '적극적 업무배제에 따른 감산 유예 특례'는 2020년 3월부터 종료됨.
 - ※ 예방적 격리 사유(적극적 업무배제 사유 포함)로 "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'를 인정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시 제66조 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.
- (적용월) 2020.3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2.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

- □ <u>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</u>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 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
 - 1일 8시간,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 - 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<u>'병가일수' 와 별도산정 가능('코호트</u> 격리' 코드)
 - *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 · 보관하여야 함.
 - (적용월) 2020.3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 -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.
 - ※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. (다만, 야간직원 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)
 - (적용월) 2020.2.~3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3.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

- □ 2020.3.에 한하여 코로나-19 집단감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를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하여야 함.
 - 맞춤형 프로그램 일시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,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는 최대 가산점수를 0.2점만 산정함.(2020.3.은 0.4점 산정 불가)

4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

- □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(월 1회)을 유선상담(월 2회) 인정
 - ---- < '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'예외 기준 원칙 > ----
 - ◈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, 유선상담(월 2회) 수행 시 인정
 - *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월 2회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하고,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…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'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'에 기재(월 2회)
 - ◆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(세부사항별지 제24호 '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')을 반드시 보관
 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<u>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(완전 중단)된 경우</u>,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 -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가 격리되거나 중국 등 6개국을 방문 (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)하여,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(월 2회)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
- 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<u>방문요양 급여</u> 는 제공 중인 상황(일시중단 포함) 또는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(월 2회)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 으로 인정함.
-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우려 등으로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 리자)의 방문상담이 불가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유선상담 (월 2회)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 … 수급자(보호자) 방문상담 거부 포함
- (적용월) 2020.2.~3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- ◆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.
- ◆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,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,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.
- ◆ 프로그램관리자(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)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 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(월 2회)로 인정

□ 방문요양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 지급

○ 코로나-19로 인해 방문요양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함 에 따라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기 고용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**한시적으로**(2020.3.)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 지급

- (대상) 2020.2. (급여제공월) 기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
- (지원범위) 의무배치 사회복지사* 1인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
 - *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별표 9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
 - ※ 사회복지사 등을 2인 이상 배치한 경우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만 지원 금을 지급하며, 해당 월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 배 치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가산(가산점수 1.8점)을 인정함.
- (지원액) 고시 제58조에 따라 산출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
 - ※ 예시)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가신금액이 18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 60만원 추가 지급함.
- (준수사항)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을 청구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인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(수급자별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, 유선 상담 등)를 수행하여야 함.
- (적용월) 2020.3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6.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

- □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를 이행 시 '한시적 코로나 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인정 확대 운영
 - 휴원 권고에 따라 2020.3.9.~22.(2주간, 평일기준)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,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10일)' 청구 가능

<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>

- 1. 장기요양기관은 휴원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…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,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 보관하여야 함.
 - ※ 긴급돌봄 수요조사: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**일정기간 운영**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,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 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
- 2.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*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
 - *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
- 3.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(시설장 1명, 요양 보호사 1명,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)을 배치하여야 함(정원 10인 이하는 시 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)
- □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기준
 - ◆ (기본원칙) 2020년 3월(3.9~22.)에 한하여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이행 시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이하 '코로나 특례비용)'
 을 월 10일 인정하여 산정 ···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.
 - ※ 기존 고시(제32조제3항)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' (최대 월 5일)은 휴원 권고 기간(2020.3.9.~3.22.)에 산정 불가하고 3월 중 그 외 기간에 청구 시 산정 가능함.
 - ◈ (주요원칙)
 - ① (대상) 2020.2.29.까지 3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
 - ② (인정일수) 휴원권고 기간인 3.9.~3.22. 동안 평일기준 10일
 - ③ (인정비용) 2020.3.31.기준 공단에 급여일정이 등록된 일자(월~금요일) 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(전액 공단부담)을 지급 … 월 중 하루라도 이용 필수(사망일, 해외출국일 적용불가)
 - ※ 고시 제31조의'라-3'의 60%(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'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' 의 60%)를 최대 한도로 함.
 - ④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를 초과(소수점 이하반올림)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(본인부담금 제외)만 지급

◈ (산정기준)

- ① 공단에 2020.2.29. 기준 3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
- ② 해당 월 중 하루라도 급여이용을 한 수급자만 해당되며, 해당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
-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을 하여야 지급하나,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.
- ④ <u>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하는 경우</u>는 '코로나 특례비용'을 최대 5일만 산정(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<u>급여비용의 50%(본인부담금 제외)만 지급</u>함. (3.2.~3.20. 기간 동안(평일 기준)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며, 그 외 일자에는 청구 불가)
- O (본인부담금)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···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 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수납
- O (월한도액) 미포함 ···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포함됨.
- (중복급여 사용) '코로나 특례비용'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,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비용 산정 불가 …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.
- (급여비용 가감산 기준) '코로나 특례비용'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(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) 제외함.
 - *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.
 - ① '코로나 특례비용'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<u>해당</u> 일자의 '입소자 수'에서 제외
 - ② '코로나 특례비용'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, 간호 사 배치가산,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출 시<u>'월 가산 기준</u> 금액'에서 제외

- 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'코로나 특례비용'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'급여제공일수'에서 제외(종사자가 배치 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)
 - ※ '코로나 특례비용'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.
- 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(5일) 또는 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10일)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'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'하되,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.
- (한시적 지원금) '코로나-19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(10일)'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 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.
- (준수사항) '코로나 특례비용'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에서 매일 실시예정인 긴급돌봄 이용률 실태확인에 협조 필요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
- (청구기간) 2020. 4. 28. ~ 2020. 6. 30. 한시적 청구 가능(3월분)
 - *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
- (청구종료일) 2020. 6. 30. ···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
- (행정사항) … 2020년 2월분 특례비용은 3.27.이후 청구가능
 - '코로나 특례비용' 3월분은 <u>2020.4.28.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</u> 되므로 <u>구체적 전산청구방법은 2020.4.28.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</u> <u>예정 …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안내 예정</u>

- □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(최대 월 5일) 대상자만 우선 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,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(청구전산화면) '가산 및 감액산정 / 입퇴소 내용관리 (주야간보호) /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'에 등록
- □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(종사자 미배치)한 경우 :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'근무가능일수'에서 제외
 -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월 <u>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'근무</u> 가능일수'에서 제외함.
 - ※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: [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,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× 8시간]

참고

현행 기준과 코로나-19 관련 미이용일 특례비용 비교표

구분	현행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	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(3차)
관련근거	고시 제32조제3항	-
적용기간	2020년 3월 (급여제공월) - 휴원 권고기간(3.9.~22.)에는 <mark>산정불가</mark>	2020년 3월 (급여제공월) - 3.9.~22.(2주간) <mark>휴원을 이행한 기관에 한하여</mark>
청구기간	급여제공월 익월	2020년 4월 28일 이후 ~ 6월 30일까지
청 구종 료일	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3년간	2020년 6월 30일까지 청구 시에만 지급
대상	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 체결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완료된 수급자 중 월 중 하루라도 급여 이용한 수급자 	 '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기준' 미적용 2020.2.29.까지 3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중 월 중 하루라도 급여 이용한 수급자
인정일수	* 평일(월~금요일) 기준으로 급여계약 통보된 일자에 한해 월 5일까지 산정 가능	 2020.3.9.~3.22.(휴원권고기간)에 한해 산정 가능 ※ 2020.3.31.기준 급여일정 등록이 된 일자 (월~금요일 기준)에 가능함.
인정비용	*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 의 50% * 고시 제31조의 '라-3'의 50% 한도로 함	 급여계약통보서의 <u>이용 예정 급여비용의</u> 60% (공단이 전액 부담) * 고시 제31조의 '라-3'의 60% 한도로 함 *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를 초과(소수점 이하 반올림)할 경우는 미이용 자에 대해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(본인 부담금 제외)만 지급
본인부담금	· 본인부담금 발생	· 본인부담금 미발생(별도 수납 불가)
월 한도액	* 비용이 월 한도액 포함	* 비용이 월 한도액에 미포함(차감되지 않음)
중복급여 사용	* 미이용일 비용 산정 시 주*야간보호 급여 이용불가, 다른 재가급여 이용가능	* 좌동
급여비용 가감산 기준	① 입소자수 : 포함 ② 월 가산 기준 금액 : 포함 ③ 급여 제공일수 : 포함	 입소자수: 해당 특례비용 산정 수급자제외 월 가산 기준 금액: 해당 특례비용 제외 급여 제공일수: 실제 이용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
기타	보호사 1명, 그 외 직종의 종사자를 1명 이하는 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) ⇒ 디	

7. 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 한시적 허용

- □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는 5등급 수급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일반 방문 요양 인정
 - O (대상) 5등급 수급자 ···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불가
 - (인정범위) 1일 1회 최대 '180분 이상' 급여 범위내 인정 (고시 제18조 표 '가-6')
 - ※ 해당 기준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허용하며, 고시 제19조 제4항에 따른 270분 이상 서비스 및 제19조제7항의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서비스 인정 불가
 - (적용기준) 월 한도액 범위 내 … 동일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중복 이용 불가
 - ※ 동일 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고시 제17조7항에 따라 1일 2회 (2시간) 방문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함.
 - O (적용월) 2020.3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8.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에 대한 특례

- □ 주야간보호기관이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
 -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비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함.
 - (적용월) 2020.3.~6. (4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 ··· 2020.1.~ 2. 소급적용 불가

9. 윌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

- □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
-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 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
 -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,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% 추가 산정 가능

 * 전산등록 경로: 급여비용청구 /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/ 서비스 내역 저장
 / 특정내용등록 /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/ 기타(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)
 - 고시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0일 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70% 추가 산정 가능
 - (적용월) 2020.2.~3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10.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

- □ 코로나-19 감염우려로 인해 방문형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하여 타의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시적 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
 - (대상)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 ··· 고시 제11조의4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
 - (인정기준) 2020.1. (급여제공월)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2월, 3월에 각각 30분 이상 ~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
 - (산정금액) 2020.1. (급여제공월)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※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'근무기간 산정' 시에는 해당 월 미포함.
 - (적용월) 2020.2.~3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11. 특별관리지역 등[대구·경북]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

- 특별관리지역 등(대구·경북에 한함)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감염우려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음 …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
 * 퇴사 직원의 실제 근무기간(6개월 상근 요건)에 관계없이 적용
- 장기요양기관은 특별관리지역(대구·경북에 한함)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지 않으며, 동 기간 동안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.
 - 다만,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근무인원 1인이 배치된 것으로 적용함.
 - * 특별지침을 적용받는 직종 외 타 직종 종사자가 추가배치 된 경우에는 인력 추가배치가산 적용이 가능함.
 - (적용월) 2020.2.~3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 - ※ (예시) 3월 15일에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 경우, 장기요양기관은 그 익월인 4월 30일까지 결원인원을 모두 채용하여야 하고, 미채용 시 5월부터는 인력배 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

12.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

- □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
 - O (격리기간 10일 이내)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
 - O (격리기간 10일 초과)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
 - 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
- □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
 - O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, 최대 15일 인정
 - 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- □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
 - O 시설(단기보호 포함)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

13.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

- □ 방문간호 시설장이 수급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코로나-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곤란 하다고 판단한 경우,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 연장
 - (대상) 유효기간이 3.1.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
 - (적용월) 2020.3.1. ~ 4.30.(2개월간) 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급여 비용 인정함.
 - ※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함.